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서

참사랑노인복지센터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준비할 기회’

연명의료결정제도

■ 목적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 주요 용어

- 말기환자 :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사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이란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유보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
- 연명의료중단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
- 호스피스·완화의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결정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STEP 1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우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같음 할 수 있습니다.

STEP 2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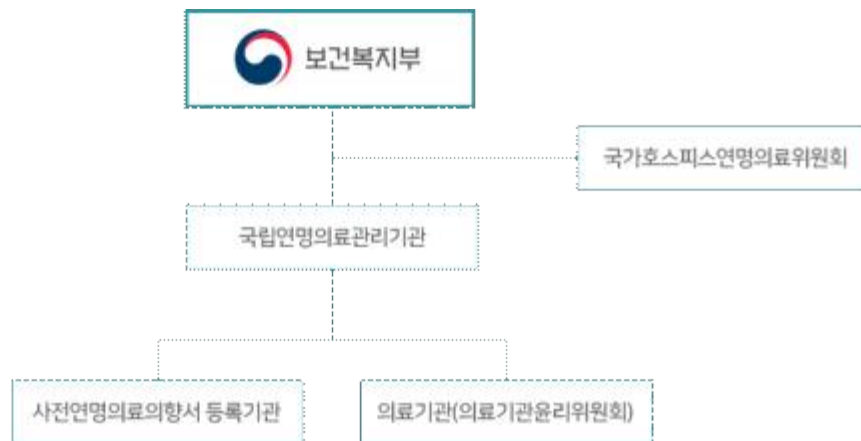
다음으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이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

당의사(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인 경우)의 확인이 있어야 합니다.

STEP 3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①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②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에 갖추어지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체계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의료계·종교계·윤리계·법조계·환자단체계 위원 총 15인으로 구성된 사회적협의기구로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기타 호스피스연명의료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시스템 구축·운영, 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관리·감독, 종사자 교육 등 제도 전반을 관리하며,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기능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른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환자의사 확인,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

■ 기록 열람신청

환자가족은 환자의 다음 기록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신청가능 서식

-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환자가족 진술)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심의 기록 (해당의료기관으로 직접 신청)

2. 신청가능자: 환자가족 (연령제한 없음)

3. 신청 방법: 기록열람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열람을 요청하면 됩니다

4. 안내사항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은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의 기록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능한 기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조회”

<https://www.lst.go.kr>

※ 인근지역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조회”

<https://www.lst.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등록번호	※ 등록번호는 등록기관에서 부여합니다.	
작성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스피스 이용	[] 이용 의향이 있음 [] 이용 의향이 없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설명사항 확인	설명 사항	1.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사항 2.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등록기관의 폐업·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확인	[] 위의 사항을 설명 받고 이해했음을 확인합니다.
환자 사망 전 열람허용 여부	[] 열람 가능 [] 열람 거부 [] 그 밖의 의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상담자	기관 명칭	소재지
	상담자 성명	전화번호

본인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을 직접 작성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작성일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또는 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자	(서명 또는 인)		

 **뒤쪽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록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①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 후에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경우에는 효력을 잃습니다.
5.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기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작성자의 의사는 향후 작성자를 진료하게 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이 모두 작성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 ✓ 치료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 ✓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입니다.
- * 단,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엇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유지술



수혈



혈압 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 (의학적 판단) + (본인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 ✓ (의학적 판단)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 ✓ (본인의사 확인 방법) ①사전연명의료의향서, ②연명의료계획서,
③가족2인 진술, ④(환자의사 확인 불가 시) 가족 전원합의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모든 의료기관에서 가능한가요?

- ✓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의료기관 검색 QR



연명의료계획서란?

- ✓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 ✓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 ✓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 ✓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해서
- ✓ 연명의료 유보·중단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검색 Q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 ✓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 ✓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 때
- ✓ 담당의사 및 해당 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 ✓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1855-0075, 수신자부담 1422-25, 🌐 www.lst.go.kr